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13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한기호 · 강명구 · 고동진

김성원 · 김종양 · 김용태

배준영 · 이현승 · 유용원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중요한 산업 거점임. 그러나 최근 농공단지는 시설 노후화, 입지 여건 악화, 인력 부족, 기반시설 부족, 입주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특히 농공단지는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규모가 작고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기반시설 정비, 기업 유치, 인력 확보, 근로자 주거 여건 개선 등에 있어 보다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입주기업, 관련 기관 간 협력 구조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및 시·도별 활성화계획 수립, 기

반시설 정비와 재생사업 지원,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및 인력 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규제 완화, 지역계획 반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 나. 농공단지 활성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농공단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공단지 관련 국가정책의 총괄·조정, 종합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생산·수출 및 고용 증대, 지역주민 소득 증대, 기반시설 운용계획,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공단지 기반시설의 설치와 정비를 지원하고, 정보화·디지털화·친환경화·에너지 효율화 및 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공단지 지정면적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농공단지를 재생사업 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영·기술지도, 판로 확보, 홍보, 경영안정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기업체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농어민 직업훈련,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정착자금 융자, 일·가정 양립,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와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차.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로 광역농공단지협의회, 기초농공단지협의회 및 한국농공단지연합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정책 건의, 정보 공유,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해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입주기업체”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농공단지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농공단지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체계

제5조(농공단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

원으로 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간사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전국 시·도지사의 협의체 및 전국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의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

2.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농공단지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제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관한 사항

2. 농공단지에 관한 국가정책의 총괄·조정 및 사후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의 조정 및 평가에 관

한 사항

6.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

항

7.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제처장

2. 조달청장

3.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위

원장이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 및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시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8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① 위원회는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 관련 예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종합계획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 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관할 지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농공단지 활성화계획(이하 “시·도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도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시·도의 농공단지의 지정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종합계획에 따른 농공단지의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공단지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정책 및 예산 확보 방안
4. 그 밖에 해당 시·도의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시·도 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도 활성화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의 자격,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우선순위
3. 농공단지의 생산·수출 및 고용 증대
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 등 농공단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5. 입주기업체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별 기능인력 수급
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 공장과의 협력 강화

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 배치
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
9.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운전자금 및 기술 지원

제3장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 및 특례

제11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改替)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농공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기업체, 기반시설 등의 디지털화, 친환경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개별 기업의 폐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및 환경보전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농공단지 지정면적에 관한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

농공단지의 활성화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면적을 다르게 지정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특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구조의 변화, 농공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지역의 확산 등으로 관할 지역 농공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요건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제14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건축법」 제70조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농공단지에 건축되는 공장(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을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본다.

제4장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15조(입주 유치 및 입주기업체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의 농공단지 입주를 유치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공단지 입주 상담 및 입지 실사
2. 농공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성 검토
3. 부실기업의 대체 입주
4. 입주기업체에 대한 경영, 기술지도, 연수, 정보 제공
5. 입주기업체의 경영실태 및 동향 조사·분석
6. 입주기업체의 국내외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7. 입주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주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체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이 구매하려는 물품의 규격 등 기준이 입주기업체제품과 같은 경우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7조(인력확보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기업의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및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고용허가제(E-9)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노령인구의 농공단지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훈련 등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공단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농어업인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농어민직업훈련) ① 국무총리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였거나 취업을 희망하는 농어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업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직업훈련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농어민근로자에 대하여 직업훈련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근로자의 복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금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입주기업체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입주기업체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기업체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생활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농공단지의 문화적 가치 제고 및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문화예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공단지에 문화·관광·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농공단지 밖의 지역에 설치된 시설을 농공단지로 이전하려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농공단지에서의 문화·예술·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제21조(한국농공단지연합회 등) ① 관할구역 내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하는 전담기구로서 시·도지사는 광역농공단지협의회(이하 “광역단위협의회”라 한다)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농공단지협의회(이하 “기초단위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광역단위협의회 및 기초단위협의회의 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연합회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

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의회 및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농공단지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증진 지원
3.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조사 및 관련 정책 건의
4.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홍보
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⑦ 협의회 및 연합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그 밖에 협의회 및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2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 ①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해결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입주기업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나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제11조 및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업무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제21조에 따른 한국농공단지연합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제8항을 위반하여 한국농공단지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